

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3517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이환희

변론 종결2022. 1. 13.

판결 선고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6.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0. 6. 8. 접수 제137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 ① 원고는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0가소58271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7. 21. "C는 원고에게 12,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② C는 2020. 6. 4.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0. 6. 8. 접수 제137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③ C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등 사해행위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20. 9. 8.경 D에 대하여 5,854,000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거나, C가 적극재산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오규희

별지